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66
----------	------

2020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 의원(찬성자 42명)
- 나. 발의일자 : 2020년 7월 13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7월 14일
- 라. 상정결과 :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년 9월 3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서윤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73조제1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구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태료 등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과태료의 <u>부과·징수</u>) ① 시장이 제72조에 따른 과태료를 <u>부과·징수하는</u>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③ (생략)	제73조(과태료의 <u>부과·징수 등</u>) ① ----- <u>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을 하려는</u> -----. ②·③ (현행과 같음)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1)에 따라 인권주류화, 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 협치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제도2)를 도입·운영하고 있음3).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인권영향평가(HRIA) :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법령, 계획, 정책,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

3)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정무부시장 방침 제3호, '19.4.)

- 인권담당관에서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치법규 860개 (조례631, 규칙229)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① 차별 및 인권침해, ②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③ 시민참여 보장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자치법규 62개(조례 57, 규칙5) 96개 조항에서 개정사항을 도출하였음.
- 서울시 인권담당관에서는 서울시 자치법규 중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이의제기와 관련된 조항⁴⁾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 부과·징수 관련 내용만 포함된 조례에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에 대한 조항을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동 조례 안 제73조 역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은 적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는 ‘이의제기’를 하도록 규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하더라도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수정 의 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73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제73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시장이 제7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① -----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을 하려는 -----.	① -----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를 하려는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 이와 같이 서울시 각 실국에서는 시민참여 기반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개선하고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市 주요 정책 추진시 인권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안 제73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66
----------	---------

제안년월일 : 2020년 9월 3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 조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이 아닌 ‘이의제기’로 변경함.

2. 수정안의 주요 내용

-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을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로 수정함(안 제7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3조제1항 중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73조(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① 시장이 제7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p> <p>②·③ (생략)</p>	<p>제73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p> <p>① -----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을 하려는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3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p> <p>① -----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를 하려는 -----.</p> <p>②·③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부과·징수하는”을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를 하려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3조(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① 시장이 제72조에 따른 과태료를 <u>부과·징수하는</u>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p> <p>②·③ (생략)</p>	<p>제7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p> <p>① ----- --- <u>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를 하려는</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